리뷰논문 정보화정책 제21권 제1호, 2014년 봄호, pp.3~16

개인정보 연구동향과 과제*

방 민 석**, 오 철 호***

요 약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되어가며 개인정보가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발달과 클라우드 환경의 보급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나 유출 가능성은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의 다양한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려는 시도는 정보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온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논문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 결과에 기반을 둔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였다. 이를 간략히 보면, 첫째, 개인정보 연구가 질적·법제도적 차원에서 정보보호를 주로 강조하면서 논의되어 왔다. 둘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나 국책연구원에 비해 학계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셋째, 실태파악이나 현황조사 수준에서 진행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인과관계나 영향요인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향후 개인정보 연구를 보다 발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접근, IT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연구범위의 확대, 계량적 방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적용과 학제간 연구 활성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사용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개인정보, 정보보호, 정보활용, 개인정보관리

A Review of Studies on personal information

Bang Min Seok, Cheol H. Oh

Abstract The personal information is now considered more valuable and important topic in this highly improved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In this research, 50 research papers and government reports between 2000 and 2013 are analysed to understand a trend of academic research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o summarize of the result of the analysis, firstly, there are many discussions and emphases to governmental protec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mainly in the qualitative and legal system level. Secondly, there are insufficient research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articularly in the academic field rather than government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irdly, there are not sufficient investigations to approach influential reasons and relations of cause and effect, though there are much enough researches on the actual and present conditions of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o develop the investig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t needs to be considered to research more about systematic approach to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expansion of research area considering the changeable IT environment, diverse methodological experiment like a metrical way, reformation of investigation system, and improved information management in the private sector.

Keywords: personal information, information protection, utilizing information, information management

2013년 12월 21일 접수, 2013년 12월 23일 심사, 2014년 1월 20일 게재확정

* 본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일부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108).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행정학과 교수(futurama@dankook.ac.kr)

*** 교신저자,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coh@ssu.ac.kr)

I. 시작하며

오늘날 개인정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 마련과 민간기업의 활동에 개인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빅데이터 시대의 본격적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과 분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둘러싼 각종 유출사고와 오남용 등과 같은 침해사례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부작용을 보이게 되었고 그 유형도 다양화·복잡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는 국가만이 수집 및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관리·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정보는 단순히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이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 이슈로 변화하였다. 일반 국민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정보주체로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요구와 서비스 이용자로서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보제공이라는 상충된 입장에 동시에 직면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1991년 5월 10일부터 국무총리훈령으로 마련된 「전산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지침」을 시작으로 행정기관들이 컴퓨터에 수록한 개개인에 대한 각종 자료가 자신들의 의사와는 달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시행했다. 그 이후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1994년 1월 7일 법률 제734호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차례로 정비하면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입법적 수요에 꾸준히 대응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빠른 IT 발전 속도와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개인정보의 투명한 관리, 정보이용·제공의 적절한 통제 등을 담보하지 못하는 모습도 동시에 보였다고 하겠다.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창된 '정부3.0'은 공공정보의 개방을 전제로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국가적 공유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에 부딪혀 관련 기관 차원의 공유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정보주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개인정보 문제라고 하겠다.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와 각종 정책제안들은 학계나 공공·민간 부문에서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한편으로 보면 진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진 것은 의미가 있으나 기존의 논의들은 법률검토나 관련 기술 도입 등의 특정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 많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연구 대상으로 언급했다고 할지라도 행정이나 정책연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논의를 정책대안이나 방향제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고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행정·정책학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연구가 어떠한 모습과 향후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의미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 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기존 개인정보 관련 연구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Ⅱ. 개인정보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개인정보의 개념 및 특징

개인정보라 함은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일반적인 인적 사항, 생체·의료·교육·고용·재산·정치성향·종교·사회활동·문화생활 등에 다양하게 존재하며, 정태정보와 동태정보로 구분된다.[1]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은 학문분야와 법률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Privacy)의 개념을 전제로 설명되었지만 최근에는 개념적으로 구분하거나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윤상오, 2009:3).[2]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였는데, 산업사회에서는 "타인에

〈표 1〉 개인정보의 구분 및 유형

구분	개인정보 유형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수익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교통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 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

1) 정태정보는 개인의 현재 상태 또는 속성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성을 판별하는 기초가 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동태정보란 정태정보가 축적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보로서 개인의 성향이나 행동유형의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추론적(Inferential) 정보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2조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게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사적영역의 비밀성을 외부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으려는 개인의 소극적인 권리로서 인정받았다. 그 뒤에 정보사회로 진화하면서 공간·신체·통신 프라이버시에서 더 나아가 소극적 권리가 아닌 자신의 사생활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서 정보프라이버시 개념이 더해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일반적 인격권 등 헌법 이념에 기초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대상이 된다.[3)]

하지만 개인정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적인 보호대상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활동과 공동체 운영의 기초로 기능하면서 프라이버시와 구분된다고 하겠다. 프라이버시가 주관적 관념의 대상인 반면,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Information Identifiable To The Individual)'로서 사생활의 비밀정보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객관적 관념의 대상이 된다. 한편 개인정보도 크게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자체만으로는 프라이버시와 무관한 개인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감한 의료정보나 신용정보 등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할 때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되는 것이 전자의 예라면, 이름이나 주소와 같이 이미 여러 형태로 공개되었지만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 개인이 특정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면 이것을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 후자라고 하겠다.[4)]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면 개인정보의 구성요소로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과의 관련성, 정보의 임의성, 식별 가능성이라는 4가지를 들 수 있다. 이때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며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을 개인정보로 보게 된다. 개인과의 관련성은 특정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을 구별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정보(성명, 생일, 주소 등)와 특정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교육상황, 재정상황, 진료 및 건강 상태 등)를 포함한다. 정보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며, 정보의 처리 형식이나 처리 매체에도 제한이 없다고 본다. 개인의 식별 가능성은 정보의 결합 또는 조합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구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별한다.

2. 개인정보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는 주로 보호 측면에서부터 시작하였다. UNESCO가 1970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의뢰하고, 1973년에는 미국 보건교육복지부(HEW)가 "기록과 컴퓨터 및 국민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1980년에는 OECD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도 활발해졌다. 그 이후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컴퓨터에 의한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산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의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기

3)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관계는 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동일 개념이라는 견해, ②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에 포함된다는 견해, ③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견해, ④ 양자가 각각의 다른 영역으로 존재하며 일부만 겹친다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중에서 ④번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4)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수집하지 않고 업무처리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개인정보와 정보주체가 직접 서비스 등록이나 이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방통위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2013.12.18.)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에 한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지침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보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술정보의 발달에 따라 계속 확대되면서 통상적인 개인정보의 수명주기(Life Cycle; 수집-저장 및 관리-이용 및 제공-파기)과정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문제도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나 생체인식기술 발달을 바탕으로 하는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정책과 같이 국내외 정책현안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게 된다. 최근에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정보의 문제, SNS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개인정보 문제 등도 강조되고 있으며, 기존의 개인정보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과 결합하여 정책문제 해결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행정개혁노력에 힘입어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 환경의 수요에 대처하는 추진동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환경 추세에 대처하는 움직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5]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새로운 법제와 적실성이 담보된 정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정영수(2012)는 빅데이터 속성 및 데이터 처리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개인정보 침해우려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면서 각 유형별 수집, 전처리, 분석, 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침해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제도화 추진, 자율규제 생태계 구축, 국제 협력체계 강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구체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창범(2013: 534-540)은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보다 구체적인 장애요인으로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엄격한 옵트인 제도와 데이터 수집·이용 제한, 역사·통계·과학연구 목적의 개인정보처리 제한, 데이터 마이닝 및 프로파일링의 원칙적 금지를 들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포괄적 동의 원칙의 채택과 옵트인 제도, 쿠키정보 등에 대한 처리기준 불명확,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과도한 제한 등을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다.

Ⅲ.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개인정보 연구는 행정·정책학을 비롯해 법학, 경영,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를 포괄하여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학제간 결합이 가속화되고 특정 주제에 대하여 융합적 관점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연구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정책학 분야의 학술지와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향후 개인정보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먼저 국내 주요 학회의 학회보, 관련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논문과 보고서, 정부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일차로 선정하였다. 학회보의 경우 오철호(2009)를 참고하여 행정학분야의 학회 중에 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중 「한국행정학보」, 「학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와 행정학분야의 유일한 정보화관련 학술지인「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학술지로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학술지인 「정보화정책」도 함께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는 국가정보화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

5) 예를 들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발표(2011.11),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 발표(2012.6),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 준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행정연구원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의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이하 '프리즘')에 등록, 공개된 보고서를 함께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의 대상 연구는 논문제목이나 키워드에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들로, 특히 연구요약문이나 본문내용에 개인정보를 중점으로 제시해 설명하고 있거나, 이를 응용하고 있는 연구들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6] 포괄적인 검색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단순히 세항의 작은 항목으로 반영되었거나 연구주제의 실질적 논의에서 부차적으로 언급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분석 범위는 시간적으로 2000년에서 2013년까지로 한정하였으며, 공간적으로 국내에서 발간된 연구논문과 보고서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질적 접근, 양적 접근, 질적-양적 병행접근이라는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설펴보았으며, 더불어 정책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와 현상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고 법칙을 발견하려는 설명적 연구로 분석 유형을 나누어 함께 분류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설문이나 인터뷰와 같은 1차 자료 수집과 문헌고찰과 같은 2차 자료 수집으로 구분하여 보았으며, 자료분석 및 통계기법 적용 수준과 특정 이론에 기반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life-cycle에 따라 정보활동 전반, 수집 및 생성, 저장 및 관리, 이용 및 제공, 보존 또는 파기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연구분야와 연구목적에 대하여도 세부주제별로 함께 검토하였다.

Ⅳ. 개인정보 연구 경향: 분석결과

1. 연구기관 성격 및 발간유형

국내의 행정·정책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연구기관(출판기관)과 발간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6편(자체연구보고서 18편, 학술논문 8편)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계의 학술논문 12편과 정부부처의 정책연구보고서 12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분석학회에서는 각 1편씩 연구되었다.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인정보 연구가 학계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논문 및 보고서의 주제 및 내용을 함께 고려해 살펴보면 학계의 논문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터넷 본인확인수단(I-PIN)이나 공공기관의 CCTV도입, 개인정보 위험의 대상과 방식 등 세부주제들과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들은 구체적인 사업이나 대상보다는 법제 개선이나 정책이슈 전반에 걸친 연구가 진행된 경향을 보였다.

〈표 2〉 연구기관 및 발간유형별 개인정보 연구 현황

구분	연구소	정부기관	학회	합계
자체연구	18	-	-	18(36%)
정부보고서	-	12	-	12(24%)
학술논문	8	-	12	20(40%)
합계	26(52.%)	12(24%)	12(24%)	50(100%)

6) 다만 프리즘의 정부보고서의 경우 해당 연구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 자료는 제외하였다. 제외된 연구는 총 3편이며 국방부 2건, 안전행정부 1건이다.

2. 연구 추세

개인정보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는 꾸준하게 이어지지 못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4년에는 전자정부 법제 정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기초연구나 유비쿼터스 사회의 역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다른 연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상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가 국책연구원을 통하여 수행되었다면 2000년대 후반에는 정부기관이 직접 연구 과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회에서는 2008년 이후 연구가 활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특정 연도(2004년, 2008년, 2009년, 2013년)도에 연구성과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는 중요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연구자의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예상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분석유형

연구방법으로 보면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 질적·양적 방법의 병행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정보 연구에 있어서 38편이 질적 연구를 하고 있으며, 양적 연구는 9편, 병행연구는 3편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병행연구는 모두 빈도분석이나 기초통계, 2차자료 단순인용 등이며 질적 연구의 보완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혼합연구로서의 모습을 보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질적·양적 연구로서 교과부(2009)의 연구는 타당성분석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연구모형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논의하는게 아니라 단순한 통계와 수요조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분석유형을 나누어 본 결과 42개가 기술적 연구를 하고 있었으며 8개가 설명적 연구로 나타났다. 설명적 연구의 경

〈표 3〉 개인정보 관련 연구 추세

연도	연구소	정부기관	학회	계
2000	1	-	1	2
2001	3	-	-	3
2002	-	-	-	0
2003	1	-	1	2
2004	8	-	3	11
2005	1	-	1	2
2006	2	1	-	3
2007	-	3	-	3
2008	-	1	5	6
2009	1	2	3	6
2010	-	1	1	2
2011	1	1	-	2
2012	-	3	1	4
2013	-	-	4	4
합계	18	12	20	50

〈표 4〉 개인정보 연구방법 및 분석유형

구분		설명적 연구	기술적 연구	합계(편)
질적연구	자체연구	-	16	38
	정부보고서	-	9	
	학술논문	-	13	
질적·양적연구	자체연구	-	1	4
	정부보고서	-	2	
	학술논문	-	1	
양적연구	자체연구	1	-	8
	정부보고서	1	-	
	학술논문	6	-	
합계		8	42	50

우 학술논문이 대부분이었으며 모두 양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4. 자료수집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문헌 중심의 논의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설문이나 인터뷰와 같이 1차 자료수집을 통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4편이었고, 문헌 등 2차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는 38편으로 나타났으며,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는 경우가 8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1차 자료의 수집은 학술논문에서만 이루어지고 국책연구원의 자체연구나 정부보고서에서는 설문을 통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가 법제도적인 거시적 측면에서 국내외 사례비교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개인정보와 관련 제도의 개념적 정립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5. 자료분석 및 통계기법 적용 수준

양적인 연구방법을 수행한 12편의 글들중 6편은 단순통계기법으로서 빈도분석만 진행되었으며,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한 AHP기법과 T검정을 사용한 경우가 3편, 기타 기법을 사용한 경우가 3편이었다. 표집된 연구 편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급분석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상당히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사용된 기법을 보면 정준화·김동욱(2013)의 연구는 스마트사회의 개인정보 위험 대상 및 방식과 기존 정보사회의 차이를 밝히고자 2010년 이후 3년간 개인정보 위험을 다룬 951건의 신문기사 17,423개의 문장에 대한

〈표 5〉 개인정보 연구의 자료수집방법

구분	자체연구	정부보고서	학술논문	계
1차자료	0	0	4	4
2차자료	16	9	13	38
혼합	2	3	3	8
합계	18	12	20	50

텍스트네트워크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질적 변화는 신규 색인어(Index)의 등장 여부로 측정하고 양적 변화는 각 색인어의 중앙성(Centrality) 순위 변동으로 파악한 이 연구는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대응이 정보사회 이슈와 스마트사회 이슈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스마트사회 개인정보 위험대상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위험 방식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영진(2010)은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기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범국가적 정보보호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보호 정책현황에 대한 추세분석과 SWOT분석을 실시하고 정부·기업·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보호과제의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6. 특정 이론기반의 유무

개인정보 연구에 있어서 법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그동안 행정·정책학 분야에서는 특정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실태나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가지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성욱준(2013)은 노무현정부 시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이명박정부 시기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정책흐름모형으로 비교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면서 정책선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상오(2009)는 전자정부의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의해 정부신뢰를 저해한다는 전제에서 전자정부가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특징과 신뢰위기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토론을 통하여 전자정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탐색하였다. 강휘원(2000)은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효용과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과 「개인정보보호지침」등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함축된 자율규제제도를 분석하였다.

7. 개인정보 수명주기에 따른 내용 구분

일반적인 정보의 life-cycle을 준용한 개인정보의 수명주기를 구분한 뒤 이를 정보활용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세분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7]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보면 정보수명주기의 저장·관리 단계에 연구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활용보다는 보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래 감시사회 속에서

〈표 6〉 개인정보 수명주기에 따른 구분(중복코딩)

구분	활용	보호	계
주기 전반	0	3	3
수집·생성	0	5	5
저장·관리	8	38	47
이용·제공	3	0	3
보존 또는 파기	0	1	1
계	11	46	

7) 이와 관련하여 이향수(2008)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심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 및 파기 단계별로 개념화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의 관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인주의, 권력의 분포, 불확실성의 회피 등의 사회문화적 차원과 개인정보의 민감도, 개인침해 경험, 개인의 성향 등 개인적 차원으로 탐색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정보기술의 혜택을 수용하기 위해 역감시체계의 구축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성선제(2004)의 연구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민간영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의 부재공간을 채워줄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김철완·이민영(2000)과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기존 논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처하거나 예방 목적이 강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8. 연구적용 분야

연구가 수행된 주요 분야를 내용에 따라 공공, 민간,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나누어 보면 공공부문을 내용으로 한 경우가 52%, 민간부문을 내용으로 한 경우가 37%,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해서 진행한 경우가 11%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연구는 비교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 사례 분석 등을 감안한다면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자체연구는 3개 구분에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보고서보다 학술논문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연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9. 세부 연구주제별 구분

개인정보와 관련된 세부 연구주제별로 보면 개인정보 관련 법제(또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21편이었고, 개인정보 관련 정책(또는 사업)의 집행 현황이나 우선순위 비교 등에 해당되는 연구가 19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에 따른 사고와 예방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나 보고서는 4건이었으며, 개인정보 관련 자율규제 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도 4건으로 파악되었다. 2000년 이후 기간 동안 제도정비와 기반구축에 연구역량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스마트사회로 고도화되면서 보다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연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연구적용 분야별 구분(중복코딩)

구분	자체연구	정부보고서	학술논문	계
공공	14	7	17	38(52%)
민간	12	8	7	27(37%)
공공·민간 전반	8	0	0	8(11%)
계	34	15	24	73(100%)

〈표 8〉 개인정보 세부 주제별 구분

구분	해당 연구수
개인정보 관련 정책(또는 사업)	20
개인정보 관련 법제(또는 법률)	21
개인정보 침해 및 사고	4
개인정보 관련 민간 활동	4
기타	1
계	50

V. 결론: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행정·정책학 분야에서 개인정보 연구 동향을 학술논문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50편의 학술지와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연구기관의 성격 및 발간유형, 연구추세, 연구방법 및 분석유형, 자료수집방법, 자료 분석 및 통계기법 적용 수준, 특정 이론기반의 유무, 개인정보 수명주기에 따른 내용구분, 연구적용 분야, 세부 연구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단히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기관 성격으로 보면 개인정보 연구는 학회 등 민간보다 국책연구원이나 정부의 직접적 과제관리로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지만 연구추세 자체는 뚜렷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이지는 않았다. 둘째,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질적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보다는 현상을 기술하는 차원의 기술적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셋째,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설문과 같은 1차 자료 보다는 문헌을 중심으로 한 2차 자료 수집을 주로 하였고, 양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고급통계사용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정보 연구를 위해 특정 이론을 적용한 경우는 극히 한정적인 연구에서 나타났으며 개념적 차원이나 현황 검토 위주로 진행되었다. 다섯째, 개인정보의 수명주기로 보았을 때 저장·관리 단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정보 활용보다는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연구적용분야에서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더 많이 연구되고 있었고, 세부주제별로 보았을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나 유출, 또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관련 활동보다 개인정보 관련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접근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식정보화가 진전되고 스마트사회로 진화하면서 그동안 행정·정책학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 자체는 강조되었고, 정보보호나 사이버 보안 등의 정책이슈에서 필수적 요소로 개인정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연구자들에게 개인정보는 주 관심사가 아닌 부수적인 실행과제 수준으로 받아들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보호 자체가 그동안 사이버 범죄사건 등의 영향에 따라 중요성이 조명되었다가 잊히는 정책이슈의 부침을 겪었기 때문에,[8] 정보보호 라는 정책 프레임 내에서 논의되는 개인정보 연구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외연적으로 연구범위를 확장되기 곤란했었다고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하나의 사업단위나 정책과제가 아니라 정보화정책 전반에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되어 가는 상황은 개인정보를 기초로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보호, 보안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사전적 고려사항으로 개인정보를 간주하고 연구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연구를 과거의 전형적인 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IT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활용 차원으로도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침해가 일어날 경우 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중요성은 낮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8) 정부 예산 측면에서 볼 때도 정부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강화, 정보화 역기능 해소, 정보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투자를 강조하였지만, 정보보호 예산은 사이버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증가하였다가 이듬해 감소하고 다시 외부 사건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11).

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극적인 관리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활용과 그 과정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공정보를 개개인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로 제공하고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상업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최근 추세에서 보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셋째, 개인정보 연구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의 모색과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방법이 주를 이루고 법률이나 제도비교나 탐색적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연구가 체계적인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축적되기 힘들었다. 충분한 사례 연구와 데이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결과를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계량적인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문헌중심에서 벗어나 참여관찰이나 인터뷰 등으로 자료수집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금까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평가하거나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미비했다. 법제 측면에서 개인정보제도 자체에 초점을 둔 거시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보다 중범위 수준으로 낮춰 접근하거나 개인이나 집단 차원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책학에 관련된 이론을 접목하여 실증적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해 보는 것도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정책연구에서 벗어나 이론연구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가 특정 연구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하여 연구 인력풀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연구주제가 단편적이고 분절적이었던 측면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자들을 연계시켜 공동 작업을 토대로 연구 성과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학, 경영학, IT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기적인 공유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법학에서는 정보인권의 문제 또는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공학에서는 인증기술이나 보안기술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등 개별 전공 분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틀로 종합화시키는 것은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적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민간부문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체계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가 민간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개인 또는 민간부문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확산되는지 등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제도운영과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이론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강홍렬·양인애·김지수 (2004).「유비쿼터스 사회의 역기능에 관한 법제도적 기초연구」. 한국전산원 연구보고서.

강휘원 (2000).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 한계와 정책적 시사."「한국행정학보」, 34(3): 111-128.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변화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권헌영 (2004).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정보화정책」, 11(3): 55-78.

김도승·이명훈·임영덕·김명수·전주열·이준호·채재희

(2007).「전자정부법 체계 정비 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조합 연구보고서
김철완·이민영 (2000).「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철완·정준현·이상원·오영석 (2001).「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철완·정준현·황승흠·황성기·이종필·김선환·조영훈·이민영·권헌영 (2001).「건전한 정보통신 윤리확립과 개인정보 보호대책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문신용 (2003).「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문신용·윤기찬 (200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의 함의 및 과제."「한국행정연구」, 13(4): 210-249.
박노형 (2010).「EU 및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 법제처 연구보고서.
박정훈·김행문 (2008). "생체정보 프라이버시의 쟁점 및 정책 시사점."「정보화정책」, 15(3): 83-99.
서완진·이미정 (2008).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호 현황 분석."「한국행정연구」, 17(1): 221-245.
성선제 (2006).「사이버공간과 사생활 보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성욱준 (2013).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보」, 22(2): 151-179.
소비자보호원 (2006).「개인정보 도용방지 및 도용피해 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보고서.
신영진 (2008). "공공기관의 CCTV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2): 1-21.
신영진 (2009).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수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관리를 중심으로."「정보화정책」, 16(1): 41-53.
신영진 (2010).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국가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미래예측분석기법을 통한 정보보호정책 과제를 중심으로."「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3): 65-90.
신영진 (2013a).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 영향평가항목의 도출과정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87-111.
신영진 (2013b). "인터넷본인확인수단(I-PIN)의 보급 및 적용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한국정책학회보」, 22(3): 171-199.
신영진·김성태 (2003). "정보보호에 관한 이론적 연구."「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6(2): 67-88.
신영진·김성태 (2004). "정보보호 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분석 : AHP기법을 이용한 정책비교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13(3): 29-62.
안순신·임종인·하태훈·한상희 (2007).「전자적 형사사법정보의 공개 및 보호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오길영 (200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RFID 규제에 관한 연구."「정보화정책」, 12(2): 47-69.
윤광석 (2011).「민간기업보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능개선 연구: 법률 및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윤상오 (2009).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 정부신뢰 구축의 관점에서."「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2): 1-29.
이규정·김민호·박영철·지서우·최경진(2009).「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규정·김일환·이민영·김현경 (2009).「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보고서.
이민영 (2012). "애플社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정보화정책」, 19(1): 74-90.
이민영·김명식·홍석한·이한주 (2012).「해외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동향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이병준·백경일·나승철·김도년 (2011).「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약관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보고서.
이인호·김일환·정태호·권건보·이창범 (2006).「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이인호·최유·김송옥·이진태 (2004).「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연구보고서
이자성 (2008). "한국 지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일본·국제기구의 법률을 중심으로."「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4): 81-108.
이창범. (2013).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법학논총, 37(1): 509-559.
이향수 (2008). "개인정보보호에의 관심과 대응."「정책

분석평가학회보」, 18(2): 205-230.
임종인·변진욱·박종환·박현아·이유정 (200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연구보고서.
정영수. (2012). Big Data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NIA PRIVACY ISSUES 제7호(2012.12.24.).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정책단.
정준화·김동욱(2013). "스마트사회 개인정보 위험의 대상과 방식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113-136.
정찬모·이창범 (2009).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원칙." 「정보화정책」, 16(4): 113-126.
정찬모·이창범·박균성 (2009). 「개인정보 보호와 적정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제도 도입 연구. 법제처 연구보고서.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특허정보 공개 및 보급 확대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문제간의 상충가능성 검토」. 특허청 연구보고서.
한국전산원 (2001). 「정보통신망 이용관련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 (2004a). 「국외 개인정보보호 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연구보고서.
한국전산원 (2004b).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립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연구보고서.
한국전산원 (2004c). 「IT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현안 분석」. 한국전산원 연구보고서
한국전산원 (2005).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을 위한 사례연구 :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주요국 정보보호 동향조사」. 한국전산원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07).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유의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연구보고서.
홍준형 (2004).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를 위한 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연구보고서